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3. 23.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2022년 3월 10일

나.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2년 3월 18일

라. 상정일자: 제23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2. 3. 2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22. 1. 13. 시행) 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적시에 현행화하고자 2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입법의 효율을 높이고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후 2022.1.13. 시행에 맞춰 별도의 내용 변경 없이 총 2개의 조례에서 상위법을 단순 인용하는 조문을 일괄로 정비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임.

○ 주요내용은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u>같은 법 시행령 제80조부터 제80조의3</u> 에 따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같은 법 시행령 제78조부터 제80조</u> ----- ----- ----- ----- ----- ----- -----.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u>같은 법 시행령 제8조</u> 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	제1조(목적) ----- ----- <u>같은 법 시행령 제10조</u> ----- ----- -----

현 행	개 정 안
<p>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 ----- ----- ----- -----.</p>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들을 일괄로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473 호
----------	---------

제출연월일: 2022. 3.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22. 1. 13. 시행) 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적시에 현행화하고자 2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입법의 효율을 높이고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22. 1. 13. 시행)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

- 1) 총 2개 조례 / 2개 조문 (일자리경제과 등 2개 부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생략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서울특별시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부터 제80조의3”을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부터 제80조”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u>같은 법 시행령 제80조부터 제80조의3</u> 에 따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같은 법 시행령 제78조부터 제80조</u> ----- ----- -----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u>같은 법 시행령 제8조</u> 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같은 법 시행령 제10조</u> ----- ----- ----- ----- ----- ----- -----.